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2024)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 경우)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 경우)
30분 이상	16,630	2,495	150분 이상	48,250	7,238
60분 이상	24,120	3,618	180분 이상	54,320	8,148
90분 이상	32,510	4,877	210분 이상	60,530	9,080
120분 이상	41,380	6,207	240분 이상	66,770	10,016

* 심야: 22시~익일 06시 , 일요일 (30% 가산) /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50% 가산)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시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47,670	7,151
	40분 이상~60분 미만		38,136	5,720
	요양보호사 1인 몸씻기	60분 이상	38,136	5,720
		40분 이상~60분 미만	33,369	5,005

※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60분 미만인 경우 80%를 산정한다.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80%를 산정하며,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보험료순위 0~2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조항)	6%
*보험료순위 25~5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조항)	9%

